

서류번호:

보관기한:

경제부 표준 검사국 공고

공포 일자: 중화민국 114년 7월 18일

공포 번호: 경표검정자 제11430012340호

첨부문서: 경제부 표준 검사국 검사 대상 전력 변환
시스템 상품과 관련된 검사 규정 개정 초안
대조표



취지: <검사 대상 전력 변환 시스템 상품과 관련된 검사 규정> 개정 예고

근거: 행정 절차법 제151조 제2항 준용 제154조 제1항

공고 사항:

1. 개정 기관: 경제부 표준 검사국
2. 개정 근거: 상품 검사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
3. <경제부 표준 검사국 검사 대상 전력 변환 시스템 상품과 관련된 검사 규정 개정 초안 대조표>는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본 안은 경제부 표준 검사국 홈페이지 (<http://www.bsmi.gov.tw>)의 <주요 소식/업무 공고> 페이지 및 경제부 법규 검색 시스템/입법 예고 포럼(웹사이트: <http://law.moea.gov.tw/DraftForum.aspx>)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경제부 글로벌 정보망 홈페이지/법규 및 소송/입법 예고>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4.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개정 제안이 있다면 본 공고가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의한다.

(1) 담당 부서: 경제부 표준 검사국 검사 행정과

(2) 주소: 타이페이 중정구 지난로 1, 4호

(3) 전화: 02-23431700#1248, 담당자: 천첸텅

(4) FAX: 02-33433991

(5) 이메일: chunteng.chen@bsmi.gov.tw

국장 천이링

경제부 표준 검사국 검사 대상 전력 변환 시스템 상품과 관련된 검사 규정 개정 초안 대
조표

유형	개정 후			개정 전			검사방법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전원 공급 장치	전력 변환 시스템 (PCS) (검사 대상 용량은 100kW 이하인 경우에 한함)	<p>1. 태양광 모듈 입력 단자가 있는 경우: CNS 15426-1(2011년 버전) 및 CNS 15426-2(2013년 버전) 태양광 모듈 입력 단자가 없는 경우: CNS 62477-1(2023년 버전)</p> <p>2. 산업 환경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CNS 14674-2(2023년 버전) 및 CNS 14674-4(2023년 버전) 산업 환경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CNS 14674-1(2023년 버전) 및 CNS 14674-3(2022년 버전)</p> <p>3. 대만전력주식회사 전력망(이하 '계통 연계'로 약칭함)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 (1) 용량이 20kW 이하인 경우: CNS 15382 (2018년 버전) 또는 계통 연계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력 변환 시스템 병렬 기술 규정 (2024년 버전) (2) 용량이 20kW를 초과하고 100kW 이하인 경우: 계통 연계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력 변환 시스템 병렬 기술 규정 (2024년 버전)</p> <p>4. 용량이 20kW를 초과하고 100kW 이하인 경우: 에너지 저장 전력 변환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검사 기술 규정(초안) (2024년 버전)</p> <p>5.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 버전)</p>	8504.40.92.00.6 C 8504.40.93.00.5 C 8504.40.99.50.8	전력 변환 시스템 (PCS) (검사 대상 용량은 20kW 이하인 경우에 한함)	<p>1. 태양광 모듈 입력 단자가 있는 경우: CNS 15426-1(2011년 버전) 및 CNS 15426-2(2013년 버전) 태양광 모듈 입력 단자가 없는 경우: CNS 62477-1(2023년 버전)</p> <p>2. 산업 환경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CNS 14674-2(2023년 버전) 및 CNS 14674-4(2023년 버전) 산업 환경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CNS 14674-1(2023년 버전) 및 CNS 14674-3(2022년 버전)</p> <p>3. 대만전력주식회사 전력망(이하 '계통 연계'로 약칭함)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 CNS 15382 (2018년 버전) 또는 계통 연계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력 변환 시스템 병렬 기술 규정 (2024년 버전)</p> <p>4.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 (2013년 버전)</p>	8504.40.92.00.6 B 8504.40.93.00.5 B 8504.40.99.50.8	형식 인가 로트별 검사 또는 검증 등록 (형식 시험 방식 + 전면 품질 관리 제도 방식 또는 공정 품질 관리 제도 방식 또는 공장 검사 방식)

유형	개정 후			개정 전			검사방법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 표준 CNS 62477-1에 따라 표에 열거된 상품을 시험하는 경우, 제4.9절 기계 활성 물질(먼지 및 모래) 및 제5.2.6.6절 먼지 및 모래 시험은 생략해도 된다. 2. 검사 표준 CNS 14674-2 및 CNS 14674-4에 따라 표에 열거된 상품을 시험하는 경우, 본체, 포장 또는 설명서에 “본 상품은 산업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3. 표에 열거된 상품에 계통 연계(併網)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계통 연계 관련 기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p>기타 검사와 관련된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에 열거된 검사 용량 20kWh 이하 상품의 검사 시행일 및 증서 발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6년 7월 1일부터 수입품 및 국내 생산 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규정 코드 번호는 C02이다. 검사 방식은 형식 인가 로트별 검사 또는 검증 등록(형식 시험 방식 + 전면 품질 관리 제도 방식, 공정 품질 관리 제도 방식 또는 공장 검사 방식)을 병행한다. 공고일로부터 본 국(局)은 형식 인가 또는 검증 등록 신청을 받는데 형식 인가 로트별 검사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먼저 형식 인가를 신청하여 형식 인가 증서를 취득하고, 상품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출고 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검증 등록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국(局)의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검증 등록증을 발급한다. (2) 형식 인가 증서 및 상품 검증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다. 공고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발급된 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행일 이후 발급된 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2. 표에 열거된 검사 용량 20kWh~100kWh 이하 상품의 검사 시행일 및 증서 발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7년 7월 1일부터 수입품 및 국내 생산 상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며, 수입 규정 코드 번호는 C02이다. 검사 방식은 형식 인가 로트별 검사 또는 검증 등록(형식 시험 방식 + 전면 품질 관리 제도 방식, 공정 품질 관리 제도 방식 또는 공장 검사 방식)을 병행한다. 공고일 이후 본 국(局)은 형식 인가 또는 검증 등록 신청을 받는데 형식 인가 로트별 검사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먼저 형식 인가를 신청하여 형식 인가 증서를 취득하고, 상품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출고 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검증 등록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국(局)의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검증 등록증을 발급한다. (2) 형식 인가 증서 및 상품 검증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다. 공고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발급된 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행일 이후 발급된 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3. 표에 열거된 상품이 본 국(局)의 자율성 제품 인증(VPC) 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차이 시험(Differential test)을 추가로 진행한 후 형식 시험 보고서로 전환하여 발급할 수 있다. 4. 표에 열거된 상품의 형식 시험 접수 장소: 본 국(局)이 승인한 지정 시험기관 5. 표에 열거된 상품의 형식 시험 비용: 시험기관의 요금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6. 표에 열거된 상품의 형식 시험 시 제출해야 하는 기술 문서는 “전기·전자류 상품의 형식 인가 업무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7. 표에 열거된 상품의 형식 인가 또는 검증 등록 접수 장소는 본 국(局) 또는 본 국(局)의 소속 지국이며 검증 등록 적합성 평가의 절차 방식은 “상품 검증 등록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표에 열거된 상품의 형식 인가 또는 검증 등록 관련 비용은 “상품 검사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 징수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9. 로트별 검사의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생산자 또는 위탁 생산자: 생산지 관할 구역별로 본 국(局) 또는 본 국(局) 소속 지국에 검사 신청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이외에서도 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2) 수입자 또는 위탁 수입자: 수입 상품이 도착하는 항구 관할 구역별로 본 국(局) 소속 지국에 검사 신청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이외에서도 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유형	개정 후			개정 전			검사방법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품명	검사 표준(비고)	참고 품목 분류 번호	

10. 표에 열거된 상품 형식 인가 또는 검증 등록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이다(자료 또는 샘플을 추가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대기 시간은 제외됨. 별도로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경우, 샘플 도착 후 영업일 기준 7일을 추가함).

11. 표에 열거된 상품 중 상품의 형식 인가 증서 또는 상품의 검증 등록증을 취득한 상품은 검사 의무자가 “상품 검사 표시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상품 검사 표시를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상품 본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검사일 이전에 검증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앞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 검사 표시를 할 수 있다.

12. 표에 열거된 상품은 검사 표준 CNS 15663 제5절 “함유 표시”(2013년 버전) 규정에 따라, 제한물질 함유 상황(표 1, 표 2의 양식에 따라)을 상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단,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물질 함유 상황을 제공(공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상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표시 위치는 CNS 15663 제5.3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 표에 열거된 상품의 상품 검사 표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검사 표시 방법” 규정에 따라, 식별 번호는 “문자 코드”, “신청자 코드(5자리)”, “제한물질 함유 상황”(예: RoHS 또는 RoHS(XX, XX))으로 구성된다.

(2) 식별 번호는 기본 도형 바로 아래 또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며, 제한물질 함유 상황은 두 번째 줄에 표시한다.

(3) 상품 검사 표시는 지정된 크기는 없으나, 적절한 비율로 상품 본체의 명확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번질되기 어려운 재질로 제작하고, 내용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쉽게 마모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고정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4) 검증 등록 방식을 채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검사 표시는 다음과 같다.



(5) 형식 인가 포트별 검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검사 표시는 다음과 같다.



(6) RoHS: CNS 15663에서 규정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상품에 함유된 제한물질의 함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RoHS(XX, XX): CNS 15663에서 규정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상품에 함유된 제한물질(XX)의 함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제한 물질은 CNS 15663 부속서 A에 규정된 Pb(납), Cd(카드뮴), Hg(수은), Cr⁶⁺(육가크롬), PBB(폴리브롬화 비페닐), PBDE(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를 뜻한다.

보기: RoHS(Pb)는, 해당 상품의 일부 부품에서 납(Pb) 함량이 CNS 15663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보기: RoHS(Cd, Cr⁶⁺, PBB)는, 해당 상품의 일부 부품에서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함량이 CNS 15663 부속서 A에서 규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14. 표에 열거된 상품의 검사 기준은 본 공고에서 지정한 버전을 기준으로 하며, 중·개정된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국(局)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다.

15. 표에 열거된 참고 품목 분류 번호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며, 표에 열거된 상품이 제정부 관무서 또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판정에 따라 표에 열거된 참고 품목 분류 번호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시장에 투입하기 전에 검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16. 표에 열거된 상품이 복합 기능 또는 다기능 제품으로서 검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 기준 및 검증 등록 방식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1 제한물질 함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표시 예

설비 명칭: 설치형 리튬 에너지 저장장치, 모델: XXX(비고)						
부품	제한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육가크롬 (Cr ⁶⁺)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기판	0.1 wt% 초과	○	○	○	○	○
외장	○	○	0.01 wt% 초과	○	○	0.1 wt% 초과
제어패널	—	○	○	○	○	○
부속품	—	○	○	○	○	○

비고 1. “0.1 wt% 초과” 및 “0.01 wt% 초과”는 제한 물질의 백분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비고 2. “○”는 해당 제한 물질의 백분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고 3. “—”는 해당 제한 물질이 제외 항목임을 의미한다.

표 2 제외 항목을 제외한 제한물질의 함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표시 예

설비 명칭: 설치형 리튬 에너지 저장장치, 모델: YYY(비고)						
부품	제한물질 및 화학 기호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육가크롬 (Cr ⁶⁺)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회로기판	○	○	○	○	○	○
외장	○	○	○	○	○	○
제어패널	—	○	○	○	○	○
부속품	—	○	○	○	○	○

비고 1. “○”는 해당 제한 물질의 백분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고 2. “—”는 해당 제한 물질이 제외 항목임을 의미한다.

비고 샘플의 표시 위치가 이미 상품과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샘플 상단의 설비 명칭 및 모델란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샘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모델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모델의 번호를 동일한 란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